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전라남도)

□ 민원 제목 : 목포시 불법간판 철거(의견표명)

□ 신청 취지

- 피신청인(목포시장)은 목포시 △△동 ■■■■번지에 설치된 불법 간판을 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2020.11.20.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초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방문 후 불법 간판 설치자에게 행정계도하여 자진 정비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자진정비가 되지 않아 재차 현장 방문 및 유선으로 이행토록 요구함
- 이후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변경(1년 동안 담당자 4회 교체)되면서 해당 민원에 대한 업무추진이 정체되었고, 2022.1.14. 신청인으로부터 재차 민원이 접수됨
- 불법간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전 행정예고 안내 공문을 시달하고(2022.2.9.) 불법 광고주와 면담 및 의견서 제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을 연장함
- 계고기간 내에 불법간판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2022.4.11. 이행강제금(950,000원)을 부과하였고, 2022.9.19. 불법 광고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함
- 이행강제금 납부 후 불법 광고주와 자진 철거토록 면담을 하였으나 시정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어 2022.10.5. 목포경찰서에 불법 광고주를 고발 조치함
- 이후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감사부서 지적(2022.9.17.)에 따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 철저 및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자체 직원교육(2022.9.20.)을 실시함

□ 사실관계

-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간판은 허가·신고 기관인 피신청인(목포시장)에게 허가·신고되어 있지 않으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규격(높이: 지면으로부터 5미터 90센티미터, 가로 크기: 1미터, 세로 크기: 5미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5센티미터) 등에서 법규정에 불부합하여 불법간판에 해당함
- 불법간판과 관련하여 2020.11.20. 제3자가 국민신문고에 최초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0.11.26. 피신청인이 불법간판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자진정비하도록 구두 계도하였으나 이후에도 자진 정비되지 않음
- 신청인은 2022.1.14.부터 현재까지 불법간판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총 20회 이상 제기하였고, 2022. 7월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함
- 피신청인은 불법간판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2022.2.9.)를 거쳐, 2022.4.11. 이행강제금(950,000원)을 부과함
- 이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2022.6.21.), 압류예고 통보(2022.8.8., 2022.8.24.)를 거쳐, 2022.9.8. 불법간판 설치자 소유의 차량(3대)을 압류조치함
- 피신청인은 불법간판 설치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2022.9.16.)함에 따라 2022.9.26. 재산압류를 해제하였고, 불법간판 설치자와 면담(2022.9.27.)을 하였으나 자진정비 의사가 없음에 따라 2022.10.5. 목포경찰서에 불법간판 설치자를 고발 조치함

□ 관계 법령 등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같은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같은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행정대집행법」 전체 조항

□ 판단 및 결론

- 목포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청에 대하여는 목포시 감사부서가 주무부서에 대해 이미 주의 조치를 하였고, 주무부서에서도 신청인의 민원제기 이후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하고
- 신청인의 불법간판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개선과 사고위험 방지차원에서 필요하므로, 피신청인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을 의견 표명함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전라남도)

□ 민원 제목 : 함평군 국유도로 원상복구(의견표명)

□ 신청 취지

- 피신청인(함평군수)은 함평군 △△면 ○○리 ▽▽▽번지 국유도로를 조속히 원상복구하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면 ○○리 ▽▽▽번지는 지목상은 도로이나, 현재 사면을 이루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국유도로가 사면으로 형성된 원인이 △△면 ○○리 ○○○번지 소유자가 토사를 흘러내려서 되었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조사한 바로는 확실한 연계성을 찾을 수 없음
-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상복구토록 의견 표명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국유도로 부지만을 원상복구 할 경우 인근 필지(○○○번지)가 붕괴될 우려가 크므로 옹벽 설치 또는 사면(다짐)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유도로 폭이 협소(1.5~1.8m)하여 정상적인 도로 기능과 사면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폭 3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유도로 연접 토지 소유자들(신청인, 제3자)의 기부채납이 필요함
- 이러한 판단하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 연접 토지 소유자들과 기부채납을 협의하였으나 소유자가 반대함에 따라, 향후 예산확보 및 매입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

□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서 등에 따르면 1997년 경 신청인은 콘크리트 포장길(길이 : 약 110미터, 폭 : 약 2미터 이내)을 만들어 그동안 이용함
- ▽▽▽번지 국유도로는 신청인의 사유지 포장길과 바로 연결해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행정재산 관리관은 함평군 안전건설과임
- 신청인은 해당 국유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국유도로와 연결한 ○○○번지 전(前) 소유자가 경작을 하면서 국유도로에 흙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같은 리 ◆◆◆번지 소유자가 국유도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번지 소유자가 국유도로에 흙을 내려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현상에 의해 흙이 내려와 쌓인 것으로 판단했고, ◆◆◆번지 소유자가 설치한 철조망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점유로 확인 후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처분 통지(2022.1.4.)를 했으며, 2022.3.1. 철거된 것으로 확인함
- 2022.9.6.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의 국유도로 원상복구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국유도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의견표명함
- 피신청인은 국유도로 원상회복을 위해 연결 토지의 소유자들(신청인, 제3자)과 기부채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기부채납 의사 없음 확인함

□ 관계 법령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 판단 및 결론

- 해당 국유도로의 재산관리관인 피신청인은 해당 국유도로를 지목(도로)에 맞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국유도로 원상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결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폭 3미터 도로를 개설할 경우 사유지 편입(약 132㎡) 면적과 보상비용(공시지가 기준 약 150만원)은 소규모로 보이며, 이는 현장조사(2022.10.7.) 시 함평군 관계자도 확인한 바 있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해 추진하여도 피신청인은 큰 부담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유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과 주민 통행권 확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 국유도로의 원상회복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국유도로 연결 토지의 기부채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토지를 매수하여 국유도로를 조속히 원상회복할 것을 의견표명함